#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

2023. 6.

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

## 목차

I. 현행 내부통제 규율 운영상 문제점	1
Ⅱ. 내부통제 제도개선 기본방향	3
Ⅲ. 내부통제 제도개선 세부방안	4
1. 책무구조도(responsibilities map) 도입	4
2.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	6
3.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	6
4. 제재 및 면책기준	7
Ⅳ. 제도 시행방안	9
[참고1] 기업지배구조상 내부통제의 역할 및 필요성	10
[참고2] 영국 FCA가 정한 책무의 종류 ······	11
[참고3] 영국 고위경영진 인증제도	12
[참고4]"상당한 주의"판단시 관련 참고사례(예시) 13	3

#### I. 현행 금융권 내부통제 규율 및 운영상 문제점

- □ 現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, 건전경영,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**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** 부여('16년~)
  - \* (지배구조법§24①) <u>금융회사</u>는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"내부통제기준")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내부통제가 "실효성 있게"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절차와 기준들을 다수 열거
  - 기준 未마련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기관제재, 관련 의무 미이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등 조치 부과
    - ※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(법§27)
- □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**금융사고**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**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**에 대한 의문이 제기
  -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<sup>\*</sup>하거나, **개별 직원의 일탈행위**가 장기간 방치되는<sup>\*\*</sup> 등 **내부통제 실패사례 빈번** 
    - \* DLF, 라임·디스커버리·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\*\* 대규모 횡령 등
- □ 근본적으로 현행 규율이 "형식적·절차적 의무"로 인식될 뿐,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 존재
  - ① (책임소재)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이,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
    - 금융회사 내 위임전결 등에 따라 직무권한이 위임된 만큼, 내부통제 책임도 위임된 것으로 오해
    -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이사(CEO)조차 조직내 내부 통제 의식(tone-at-the-top) 고취보다 성과중심 경영에 치중
    - 실제 내부통제 위반사건 처리과정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통제 노력을 설명하기보다, **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**고 소명

- ② (규율내용) 現법령은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 하고,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未규율
  - 금융회사는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의 **외형을 갖추는데 집중**하고 있어, 실제 **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기대하기 곤란**
  - 금융회사들은 각社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보다, **업계 표준내부통제기준**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빈번
  - 통제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정도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례\*에도 불구,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미비
  - \* (우리은행 DLF제재 2심판결) "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... 실제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즉 '내부통제기능'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함"
- ③ (이사회 역할)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이사회의 역할도 미미
  - 경영진 감시책임이 있는 이사회는,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**내부통제 적정성을 지속 점검·보완**하는 노력 필요
  - 반면, 현실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**견제·감시**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"거수기", "경영진 방패막이"라는 비판이 제기
  -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지만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이 큰 상황

#### ※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논의경과

- ② 반복되는 금융사고, 임직원 횡령 등을 계기로 "금융권 관행 개선"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('22.11월)하고, 업권별 TF 운영
- ❸ '22.8월부터 금융위·금감원은 「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」를 구성·운영
  - '22.8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 논의 → '22.11월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 → 이후 업계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금번 방안 마련

#### Ⅱ. 내부통제 제도개선 기본방향

- ◆ 내부통제 규율의 **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**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유도→금융권 신뢰회복<sup>참고1</sup>
- ①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
  - o 경영진이 실제 업무수행 권한을 **하급자에게 위임**하는 경우에도, 위임된 업무에 대한 통제·관리 책임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
  - o 각 경영진이 **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**을 가지고 소속 직원의 업무활동을 관리·감독하도록 유도
    - ☞ 권한은 위임 가능하나, **책임은 위임하지 못한다는 원칙** 구현
- ② 내부통제 기준마련뿐 아니라 운영·준수 등 일련의 과정(process)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
  - o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**내부통제**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점검,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로 관리조치 실행
  - **충분한 관리조치**가 이루어졌을 경우, 하급자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 감경·면제 가능
    - ☞ "알 수 없었다"는 변명이 아닌, "어떤 노력"을 기울였는지 소명
- ③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
  - 내부통제의 최종(ultimate)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(→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감독·감시)
  - 내부통제의 미흡·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**주주들의** 이사회에 대한 책임추궁 활성화 여건 조성
    - ☞ 「경영진↔이사회↔주주」의 내부통제 관련 **지배구조의 원활한 작동** 유도

#### ── 〈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〉 ─ 구 분 혀 햇

### 책임소재 규윸내용 이사회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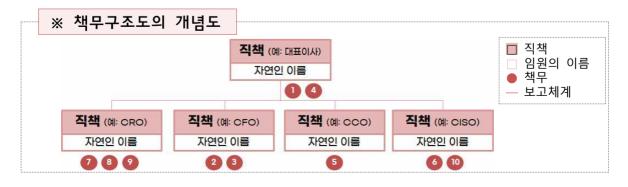
- ▶ 책임소재 불분명
- ▶ 내부통제 기준마련에 한정
- ▶ 이사회 책임의식 미미

#### 개 선

- ▶ 각 경영진별 책임영역 사전배분
- ▶ 내부통제 일련의 과정 전체 포함
- ▶ 이사회 최종 책임 명시

#### Ⅲ. 내부통제 제도개선 세부방안

- → 금융사 임원은 <sup>□</sup>책무구조도상 책임영역별로 <sup>②</sup>내부통제 관리→
  <sup>③</sup>이사회 사전적 감시 및 <sup>④</sup>감독당국의 사후제재로 실효성 제고
- 1 책무구조도 (Responsibilities Map) 도입
- □ 책무구조도란, 금융회사 <sup>1</sup>임원이 담당하는 직책(function)별로 <sup>2</sup>책무(responsibility)를 <sup>3</sup>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
  - (대상)「지배구조법」상 임원\*(이사·감사·업무집행책임자 등, 통상 C-레벨\*\*)
    - \* 회사의 규모, 해당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토록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(예: 임원의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일부 직원도 임원급으로 추가 가능)
    - \*\* CEO, CRO, CCO 등의 직책으로, 대형은행 기준 2-30여명 수준
    - 다만, 상근경영진 대비 사외이사의 제약된 정보접근성 등을 감안, 이사회 의장\*이 아닌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우선 제외
    - \*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정보접근성 및 업무시간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고, 개별 이사에게 부여되는 상법상 감시의무의 범위로 책임영역을 한정
  - ② (책무) 금융회사의 법령준수, 건전경영,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
    -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**업무 영역은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**\*할 예정
    - \* <sup>①</sup>경영관리, <sup>②</sup>위험관리, <sup>③</sup>영업 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열거
    - ※ (해외사례<sup>참고2</sup>) 영국 FCA는 (i) **Prescribed** 및 (ii) **Overall** responsibilities 제시
      - (i) (Prescribed) 금융범죄 방지, 임직원 교육, 내부감사·준법·위험관리 업무 등
      - (ii) (**Overall**) 청산·결제, 투자관리, 금융·투자자문, 기업/개인 투자상품 개발·판매, IT등
  - ③ (배분)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(책무)을 지정



- □ 각 임원은 해당 **직책별 책무**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**적극적 자격 요건**을 갖출 것을 요구
  -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**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**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**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**\*도 신설
    - \* 전문성, 업무경험, 정직성, 신뢰성 등
  - **금융회사**는 임원의 신규 선임시 뿐만 아니라,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**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**할 의무

※ 직책·책무 변경시 담당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					
구분	< 현행 >	< 개선 >			
임원의 자격요건	소극적 결격요건만 열거 (*사외이사만 적극적 자격요건)	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<b>적극적 자격요건 추가</b>			
자격요건 확인	<b>임원의 신규선임</b> 시에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	임원 신규선임 뿐만 아니라, 임원으로 旣선임된 자의 <b>직책 변경</b> <b>시에도</b>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			

- ※ 영국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임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면밀히 연계하여 운영<sup>참고3</sup>
- □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(CEO)가 마련\*
  - \* 책무구조도상 CEO의 책무에 "책무구조도 작성" 포함 예정
  -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·공백·누락 등 **작성 미흡**\*,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**거짓작성**에 대해 책임
    - \* 한 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, 회사내 모든 주요 책무를 적용대상 임원에 대해 "중복없이, 빈틈없이" 배분 필요
  - 책무구조도는 **이사회의 심의·의결**을 거쳐 확정
- □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
  - 책무구조도 **최초 작성 및 주요사항 변경**\*시 감독당국에 제출
    - \* (예)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, 영위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·폐지되는 경우 등
  - 감독당국으로부터 그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것이 아님
    - 다만,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 가능

- □ 내부통제 관리의무란,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의미
  - **관리조치**는, 소관영역에서 내부통제·위험관리기준이 **효과적으로** 작동되도록 임원이 소속직원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<sup>\*</sup>를 의미
    - \* (예) <sup>(i)</sup>기준 마련의 적정성 점검, <sup>(ii)</sup>운영의 효과성 점검, <sup>(iii)</sup>기준 준수여부 점검, <sup>(iv)</sup>미흡사항 파악·대응·개선, <sup>(v)</sup>주요사항 이사회 보고 등
- □ 특히,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**대표이사의 내부통제 "총괄"** 관리의무\*도 명확히 규율하여, 대표이사의 책임의식 고취
  - \* [대법원 2021.11.11.선고 2017다222368 판결] "특히 <u>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</u> 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·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"
  - 대표이사는 **각**社**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**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**전사적 내부통제체계**<sup>\*</sup>를 구축할 의무
    - \*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(framework) 구축과 전반적인 임원 통제활동의 적정성 점검 등에 대해 책임 → 모든 세세한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님
  - 회사 내에서 **조직적, 장기간·반복적** 또는 **광범위**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**시스템적 실패**(systemic failure)에 대해 책임
  -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
- □ 이사회의 역할 명확화를 위해,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·의결 대상에 포함
  - 이사회는 **회사 내부통제체계** 및 **운영 전반의 적정성**을 점검 하는 등 **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**\*을 부담
    - \* (**BCBS**)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유지에 대한 <u>궁극적인</u> 책임(ultimately responsible)은 이사회(board of directors)에 있음

- 책무구조도상 개별 임원은 소관 영역별로 구체적인 관리조치 (management)를 취하며,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를 감시(oversight)
- □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<sup>\*</sup> 신설
  - \* 현재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으나, CEO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
  - **내통위**는 내부통제 기본방침·전략, 임직원 윤리·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·의결
    - 아울러 내통위는 **책무구조도 적용대상**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, **미흡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개선요구** 가능
  - 내통위는 필요시 **위험관리위원회**, **감사위원회** 등 기존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**통합운영 허용**

### 4 제재 및 면책기준

- □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未실행하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하여 **관리**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<sup>\*</sup> 부과
  - \* (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) 해임요구, 직무정지, 문책경고, 주의적 경고, 주의 (업무집행책임자)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, 주의 등의 요구
  -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**감독자책임이 아닌**, 관리의무 위반행위<sup>\*</sup>에 대한 **고유의 자기책임** 
    - \*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므로, 현행 검사·제재 규정에 따른 "감독자-지시자-보조자"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을 예정
- □ 다만,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**상당한 주의를 다하여**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**책임 경감 또는 면제** 
  - "상당한 주의"는 **사전적으로,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**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

- **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수준** 등은 각 **회사 및 업계** 에서 회사별·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
  - 제도시행 前·後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**업무영역별** "Best Practice\*"를 집적(集積)할 예정
  - \* (예) 금감원·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」('22.11월)
  -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예정

#### ※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(예시) [주요사례<sup>참고4</sup>]

- ▶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,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, 예산·인력·시간의 투입수준,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여부,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적 감사 또는 외부평가 실시여부, 내부통제 개선노력 및 성과, 사고발생 예방 및 후속조치, 관련 문서·기록 관리·유지,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 수준 등
- □ 당국이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임원에 **책임을 묻는 상황을** 미리 정하여 공개(금융위 고시)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·일관성 제고
  - 사고발생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"**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**(移行) **trigger**" 기준 설정
    -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
  - **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**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**내부 자체 조사 및 징계** 등을 통해 조치

#### ※ "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trigger" 설정시 고려요인(예시)

- (위법의 양태) 해당임원의 위법행위 방치·조장·지시 여부 등
- ② (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수준) 과거 유사사건의 발생 여부, 위법 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한 외부 경고, 민원·언론 등의 집중적·반복적 문제제기 등
- ❸ (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) 피해규모, 가담인원의 규모, 위반의 지속기간, 반복성 등
- ④ (위반행위의 파급효과) 금융시장 파급 정도, 시장질서의 훼손수준, 위반행위의 결과로 인한 금융회사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, 신뢰 훼손정도 등

#### IV. 제도 시행방안

- ① (추진일정) 방안발표 이후, 공청회,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 업계 의견수렴 과정 지속 후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
- ② (적용대상별 적용시점)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, 업권별로 단계적 시행
  - [1단계] 은행·금융지주(공포후 1년 이후)
    - [2단계]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, 대형보험회사(공포후 1년6개월 이후)
    - [3단계] 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未적용<sup>\*</sup>되는 **중소형 금융회사** (5년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)
    - \* 이사회 구성운영,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, 위험관리위원회, 보수위원회, 소수주주권 행사 등

#### ※ 업권별 적용시점

(구분)	은행	지주	금투	보험	여전	저축은행
지배구조법 전체적용	전체	전체	자산총액 5조원↑/ 운용재산 20조원↑ + 종투사	자산총액 5조원↑	자산총액 5조원↑	자산총액 7천억↑
일부 규율 적용배제			자산총액 5조원↓/ 운용재산 20조원↓	자산총액 5조원미만	자산총액 5조원↓	자산총액 7천억↓

- \* □ 1단계 → □ 2단계 → □ 3단계
- ③ (특칙) 해당 회사가 아닌 他社 임원이 **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** 행사하는 경우,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 임원도 책무구조도에 표기
  - \* (예) **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업무**에 실질적 영향력 → 자회사 책무구조도에 반영, **글로벌 본사에서 외국금융회사**에 실질적 영향력 → 외국금융사 책무구조도에 반영
- ※ 동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·변경되어 입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기업지배구조상 내부통제의 역할 및 필요성

- □ **내부통제**는 회사가 직면한 **제반** <u>위험의 관리</u>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, 임직원이 준수하는 **일련의 절차**를 지칭
  - 법률위반과 관련된 **준법위험**뿐만 아니라, 회사의 **건전경영**, **주주** 및 이해관계자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목적
  - 조직 구성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
    위험규모와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

#### ※ 내부통제의 개념 및 정의

- ▶ (COSO\*) "운용, 보고, 법규준수에 관하여 <u>사업목적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</u>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, 경영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"
  - \*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
  - ㅇ "전사적 위험관리체계" 개념도입('04.1월)을 통해 내부통제의 개념범위 확대
  - o <sup>①</sup>통제환경, <sup>②</sup>위험평가, <sup>③</sup>통제활동, <sup>④</sup>정보·의사소통, <sup>⑤</sup>모니터링 등 5대 요소로 구성
- ▶ (BIS) "은행의 조직 및 영업구조를 규율하는 규정 및 통제장치"
- □ 동시에, 내부통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내 **주인-대리인 문제를 해결**하기 위한 **대리인 감시장치**로서 역할
  - 수임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프로세스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임자의 업무처리가 위임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유도
    - \* 주주(주인) 회사(대리인) / 이사회(주인) 경영진(대리인)
- □ 내부통제를 충실히 구축·운영한 임원진은,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·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도 작용
  - 임원진의 적극적 의사결정행위가 **경영판단원칙**\*으로 보호받듯, **내부통제원리**를 통해 **감시의무 위반**에 대한 면책 가능
    - \* 의사결정 당시 최선으로 보이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개별 경영진 또는 이사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음
- □ 마지막으로, <u>외부통제의 내부화</u>를 통해 외부장치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내부 위법행위를 포착함으로써 **사회적 비용도 절감** 가능
  - 경직적인 **외부규제가 포착하지 못하는** 회사 고유위험을 **스스로 조기에 식별·대응**토록 하여 규제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

#### 영국 FCA가 정한 책무의 종류

#### Prescribed Responsibilities (지정책무)

- A. 회사 고위경영진제도 이행
- B. 회사 직원인증제도 이행
- C.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규제 요건 준수
- D. **금융범죄 관련위험 대응**을 위한 정책·절차 (내부고발자 총괄, 행위규칙 교육·보고)
- E. 관리책무(Prescribed responsibilities)의 배분
- F. **이사회 구성원**에 대한 **업무안내, 교육 및 전문성 개발**을 위한 정책·절차
- G. 고위경영진(이사회 제외)에 대한 업무안내,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책·절차
- H. **일상적인 회사경영**에 있어서 **조직문화의 수용여부** 감독
- I. 회사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나갈 이사회의 책무
- J. **내부감사**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
- K. 준법감시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
- L. **리스크관리**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
- M. 보수 정책·절차의 이행 및 개선 감독
- N. **내부고발**(내부고발자 보호 포함) 관련 회사의 정책·절차의 독립성, 자율성, 효과성
- O. 회사의 자금조달, 유동성의 배분·유지
- P. 회사의 재무경영
- Q. 금융정보의 생산 및 규제활동 보고
- R. 회사의 **회생 계획** 및 **지배구조** 관련 내부 절차 감독
- S. **내부 스트레스테스트** 및 감독당국에 제출 하는 **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관리**
- T. 회사 **사업모델**의 개발과 유지
- U. **비집행이사**의 적격성 의무
- V. **고유자산 투자활동** 관련 책무
- W. (리스크관리책임자가 없는 경우) 리스크 정책·절차의 규제기준 준수 감독
- X. (내부감사 외부위탁시) 수탁회사 직무 수행 자가 외부감사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책무
- Y. **소매금융**과 **투자금융**의 **분리규제**(Ring-fence rule) 준수에 대한 책무
- Z. 고객자산 보호(CASS) 준수 책무

#### **Overall Responsibilities** (총괄책무\*)

- 1. 지급업무
- 2. 청산.결제업무
- 3. **투자관리**
- 4. 금융.투자자문
- 5. 모기지 자문
- 6. 기업금융
- 7. 기업 투자상품 판매
- 8. 개인 투자상품 판매
- 9. **고객계정 거래**
- 10. 시장조성
- 11. 투자 관련 시장조사
- 12. 발행.인수
- 13. 개인여신 취급여부 결정
- 14. 기업여신 취급여부 결정
- 15. 기업고객 상품 개발
- 16. 개인고객 상품 개발
- 17. 마케팅 자료의 생산 및 배포
- 18. 고객 **AS서비스**
- 19. **고객 불만응대**
- 20. 채권회수
- 21. 미들오피스
- 22. **정보·IT**
- 23. **BCP**
- 24. 인력 개발.관리
- 25. **회사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** 제도
- 26. 금융시장지표 산출을 위한 데이터 입력
- 27. 금융시장지표 관리

<sup>\*</sup> 각 금융회사별 특성,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 스스로 지정필요(FCA는 예시적으로만 제시)

- □ (의의) 英FCA에서 시행하는 **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**로, FSMA법에 의해 승인받고 **FCA 규제를 받는 모든 회사**에게 적용
  - \* ('16.3월) 은행·주택금융조합·신협·대형투자회사 → ('18.12월) 보험사 → ('19.12월) 기타 금융회사
  - **대상회사**는 규모, 복잡성,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따라 **3개** 유형으로 분류\*하여 규제사항(수준) **차등 적용** 
    - \* Enhanced firms(규제 추가적용) Core firms Limited Scope firms(일부규제 완화)
- □ **고위경영진 책임제도**는 회사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는 **회사 경영진의 적정한 업무수행**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
  - <u>고위경영진 직책</u>Senior Management Function\*을 수행하려는 임원은 **감독** 당국(FCA·PRA)으로부터 적격성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    - \* (예) CFO, CRO, 내부감사, 리스크위원회 의장, 감사위원회 의장, 보수위원회 의장 등
    - ※ 고위경영진은 감독당국이, 주요 직원은 회사 스스로 적격성 심사
  - 고위경영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<u>책무가 사전적으로 배분·할당</u> → 최소한으로 배분되어야 할 책무의 종류는 당국이 열거적 제시
    - (지정책무<sup>Prescribed Responsibility</sup>) 회사 **경영전반을 아우르는 기능적 책무** → 全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(예: 준법, 교육 등)
    - (총괄책무<sup>Overall Responsibility</sup>) 개별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종류·성격에 따른 책무 → 업권별·회사별 사정에 따라 상이
  - 금융회사는 고위경영진이 담당하는 **직책과 책무**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**책임명세서**Statement of Responsibilities 작성(임원별 작성)
    - 금융회사는 책임명세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"<u>책임지도</u> Responsibilities Map**"** 형태로 작성
- □ 고위경영진은 부여된 역할 및 소관 책임영역에서 <u>위반사항이</u> <u>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</u>Duty of Responsibility 부담
  -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는, 통상 그 직책에 있는 자라면 기대할 수 있는 <u>합리적 조치<sup>reasonable actions\*</sup>를 취했는지 여부</u>로 판단
    - \* (고려요인) 해당 지위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사항인지,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, 위임된 권한을 적절히 모니터링했는지 여부 등

#### 참고4

"상당한 주의"판단시 관련 참고사례 (예시)

#### 〈 영국 〉

▶ 고위경영진의 "상당한 조치 여부" 판단시 고려사항 (DEPP 6.2)

▶위반행위의 성격, 심각성 및 파급력	고위·중과실 여부,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빈도, 위반행위의 결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, 위반행위로 인한 소관영역의 내부통제/경영시스템상 허점 여부,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, 소비자 또는 시장참여자에게 미치는 손실 또는 위험의 크기,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여타 금융범죄의 특성 등
▶위반행위 이후 행위자의 행실	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숨김없이 위법행위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렸는지 여부, 조사단계에서의 협조 정도, 위반행위 이후 담당자가 취한 교정·보완 조치,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유사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둥
▶행위자의 과거 제재 ㄸㄴ ᄌ버 이경	금융회사 및 담당자에 대한 과거 제재조치 이력 등

또는 준법 이력

- ▶ FCA 가이드라인 등의 준법 여부
- ▶ 유사 사례에 대한 FCA의 제재조치 선례

#### 〈미국〉

- ▶ 미국 연방양형가이드라인 "상당한 주의 인정요건"
  - \* ① 법준수의 기준과 절차의 확립,
    - ② 회사 경영진의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이해와 효과적 실행을 위한 합리적 감독,
    - ③ 과거에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담당 임직원에서 배제,
    - ④ 회사내 모든 구성원에게 회사의 법령준수 기준과 절차를 교육,
    - ⑤ 기준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(감시·감사시스템,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),
    - ⑥ 적절한 인센티브·징계제도를 통한 법준수프로그램 촉진·강제,
    - ⑦ 법령위반 사항 발견시 적절한 대처 및 프로그램 수정

#### 〈 국내 〉

- ▶ "상당한 주의"를 활용한 입법례: 민법상 사용자책임, 양벌규정, 관리·감독책임
  - \* (민법§756)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\* (자본시장법§422) 다만,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·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\* (소비자보호법§57) 다만,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·면제할 수 있다
- ▶ 양벌규정 : 종업원에 대한 "상당한 주의와 감독"의 판단기준 관련 판례
  - \* ① 법률의 입법취지, ②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,
    - ③ 그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의 취지,
    - ④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실제 피해결과 및 피해정도,
    - ⑤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,
    - ⑥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